

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제정 2025년 7월 1일 조례 제2298호

제1조(「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에서 위임된”을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에서 위임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이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제2항”을 “이란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7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·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·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”을 “요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”로, “자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”를 “자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”으로 한다.

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제1항제5호 중 “제121조”를 “법 제121조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본문 중 “제2조제3호”를 “제2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업무 이외에도”를 “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8조(징수유예 등 신청)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

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0장(제40조 및 제41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장 선정대리인 운영

제40조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) ①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“이의신청인등”이라 한다)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선정 결과를 이의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납세자보호관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,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납세자보호관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되면 그에 관한 청구 또는 신청일자, 불복청구인, 대리인 지정일자,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1조(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-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.

제2조(「오산시 시세 기본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“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)”을“(선정대리인 신청 안내·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청구인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